|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다국적과세대상행위 면세 비안(備案) 등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0호  다국적과세대상행위 면세 비안(備案) 등 증치세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다국적과세대상행위를 행한 납세자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과세대상행위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발생하는 동일 다국적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비안(備案) 수속 처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납세자는 관련 면세 증명자료를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후속 관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상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련 면세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이미 누린 세금 혜택을 반환함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운송인의 신분으로 송화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수취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전체 또는 일부 운송 용역을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가 구매하여 실제 운송자에게 제공되는 가공유와 도로•교량•수문 통행료 지출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가공유와 도로•교량•수문 통행료는 납세자가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운송 용역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2) 취득한 증치세 공제증빙이 현행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기타 개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주택임대기업 등 업체에 의뢰하여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증치세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수탁업체가 대신하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 증치세영수증 대리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2008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구가 어음할인•어음재할인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할인금리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할인기구가 할인의뢰인에게 할인금리 전액에 대한 증치세 일반영수증을 발행하고 재할인기구가 할인기구에게 재할인금리 전액에 대한 증치세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5. 이 공고는 제4조를 제외하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미처리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8월 14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等增值税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30号  现将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等增值税问题公告如下：  　　一、纳税人发生跨境应税行为，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行为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9号）的规定办理免税备案手续后发生的相同跨境应税行为，不再办理备案手续。纳税人应当完整保存相关免税证明材料备查。纳税人在税务机关后续管理中不能提供上述材料的，不得享受相关免税政策，对已享受的减免税款应予补缴，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处理。  　　二、纳税人以承运人身份与托运人签订运输服务合同，收取运费并承担承运人责任，然后委托实际承运人完成全部或部分运输服务时，自行采购并交给实际承运人使用的成品油和支付的道路、桥、闸通行费，同时符合下列条件的，其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  　　（一）成品油和道路、桥、闸通行费，应用于纳税人委托实际承运人完成的运输服务；  　　（二）取得的增值税扣税凭证符合现行规定。  　　三、其他个人委托房屋中介、住房租赁企业等单位出租不动产，需要向承租方开具增值税发票的，可以由受托单位代其向主管地税机关按规定申请代开增值税发票。  　　四、自2018年1月1日起，金融机构开展贴现、转贴现业务需要就贴现利息开具发票的，由贴现机构按照票据贴现利息全额向贴现人开具增值税普通发票，转贴现机构按照转贴现利息全额向贴现机构开具增值税普通发票。  五、本公告除第四条外，自2017年9月1日起施行，此前已发生未处理的事项，按照本公告规定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7年8月14日 |